

개정 소방법령 해설 -2-

소방시설 관계 :

종 전	현	비 고
<p>(1) 옥내소화전 설치 기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아케이드(별표1의 18항) : 미규정</li> <li>◦ 시행령 별표1의 소방대상물중 4층이상의 층에 대한 옥내소화전 설치대상 기준 (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5호)</li> <li>◦ 사업장 : 20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아케이드에 대한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기준을 추가 규정(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)</li> <li>◦ 연면적 500m<sup>2</sup> 이상 : 옥내소화전 설치 의무화</li> <li>◦ 별표1의 소방대상물중 지하층, 지하가, 무창층, 4층이상의 층에 옥내소화전 설치 대상 기준 (시행령 제16조 제5호)</li> <li>◦ 지하가 : 1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◦ 사업장 : 15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별표1 사업장 및 지하가에 대한 옥내 소화전 설치 대상 기준은 개정령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li> </ul>
<p>(2) 지하가에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기준 미규정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하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비 의무 규정 신설 (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5호)</li> <li>◦ 지하가 연면적 1,000m<sup>2</sup> 이상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여관, 호텔, 여인숙, 사업장, 지하가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기준을 개</li> </ul>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하층, 무창층, 4층 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기준(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6호)</li> <li>• 사업장 : 미규정</li> <li>• 11층이상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하지 아니한 부분의 바닥면적이 100m<sup>2</sup> 이상의 부분에 설치</li> <li>◦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상 전원설비(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7호)</li> <li>•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한 때 비상전원설비</li> <li>(3) 물분무 등 소화설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발전실, 변전실 및 보일러실에 대한 물분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지하층, 무창층, 4층이상 10층 이하의 층에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기준(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7호)</li> <li>• 사업장 : 1,500m<sup>2</sup> 이상</li> <li>• 여관, 호텔, 여인숙: 11층이상외 경우 전부 설치 의무화</li> <li>◦ 스프링클러 설비의 비상 전원 설비(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7호)</li> <li>• 층수 관계없이 비상전원 설치</li> <li>◦ 발전실, 변전실 및 보일러실에 대한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대</li> </ul>	<p>정령 시행 당시 기존 건축물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차고 주차장과 소방대상물에 설</li> </ul>
---	---	---

<p>두등 소화설비 미규정</p>	<p>상 추가규정(시행령 제18조 제1항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00평방미터 이상의 발전실, 변전실, 보일러실에 물분무등 소화설비 의무화</li> <li>* 배드 개수 및 약제 저장량 규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1호 및 동조 제3항 제1호 적용</li> </ul>	<p>치된 보일러실에 대한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설치대상 기준은 개정령 시행 당시 기존건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</p>
<p>(4) 자동 화재 속도설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동 화재 속도설비 설치 대상 기준(시행령 제28조 제2항)</li> <li>• 설치대상 : 시장, 백화점, 여관, 호텔, 여인숙, 병원, 의원, 조산소, 공장, 차고, 아케이드로서 1,500㎡<sup>2</sup> 이상</li> <li>시행령 별표1의 소방대상물에 지정수량 1,000 배 이상 제1류 및 제5류 준위험물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자동 화재 속도설비 설치에 의 규정 신설 (시행령 제28조 제2항 단서)</li> <li>•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 설치 장소에 화재 속도설비(전화동)가 설비되어 있고 상시 근무자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자동 화재 속도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함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◦ 상시 감시근무자를 배치하는 장소라 함은 자동전화(자체 수동교환을 거치지 않을 것)가 설치되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 수신기를 전담하는 근무 요원(최소한 2교대 이상 근무)을 24시간 감시근무토록 배치하는 장소를 말한다.</li> </ul>